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88호]

## 2025년도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미래의 지역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 4. 28.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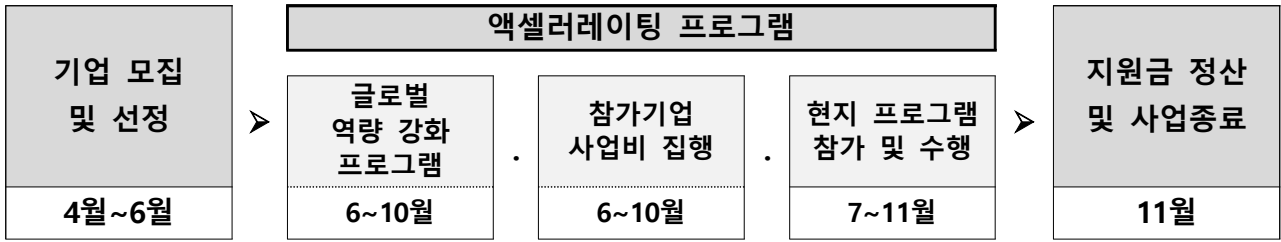
- (사업명)** 2025년도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 (사업기간)** 2025. 2.~12.
- (사업대상)** 관내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8개사 이내
  - AI + 신산업 융합 기업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스케일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스타트업
  - AI 기술 고도화, AX(인공지능 전환)를 예정(희망)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관내 스타트업
- (사업내용)**
  - 기업 맞춤형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성장자금(최대 1천5백만원) 지원
  -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인사이트 및 네트워크 확장 기회 제공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예상 진출국가>

| 연번 | 권역  | 국가/도시        | 진행 프로그램                       |
|----|-----|--------------|-------------------------------|
| 1  | 북미  | 미국/샌프란시스코    | 글로벌 BigTech기업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 2  | 유럽  | 독일/베를린       | EU AC/VC 협력 현지 스케일업 프로그램      |
|    |     | 핀란드/헬싱키      |                               |
| 3  | 아시아 | 싱가포르/싱가포르    | 아시아 AC/VC 협력 현지 실증 지원 프로그램    |
|    |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 수요 분석 후 위 권역 내 2개국에서 진행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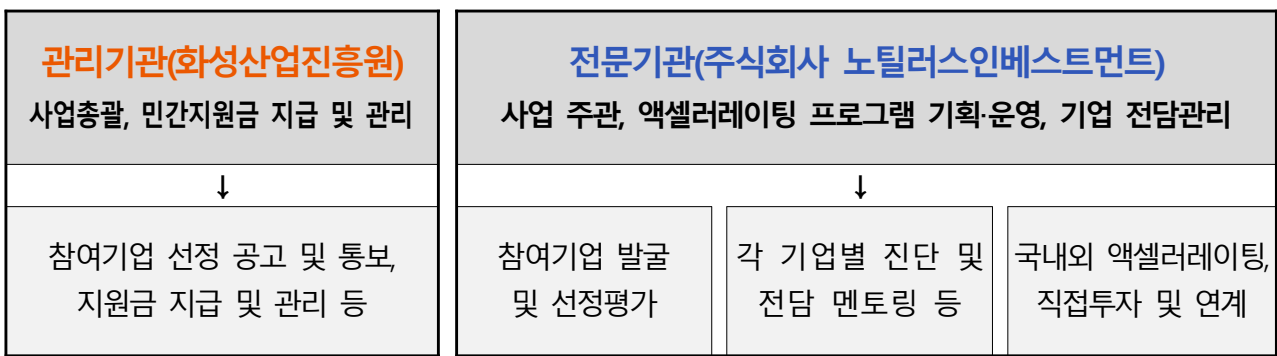
□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 사업 주체별 역할



○ 프로그램 구성(안)

| 구분            | 구성                  | 내용  |
|---------------|---------------------|---|
| 프로그램<br>지원    | 글로벌<br>역량강화<br>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시장검증) - 진출(현지화 및 비즈니스 매칭) - 확장(해외 법인설립 및 투자유치) 등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li> <li>영문 IR, 피칭 등 IR 컨설팅</li> <li>기업 역량강화 교육, 투자자 네트워킹 등</li> </ul> |
|               | 글로벌 현지<br>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현지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 글로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현지 데모데이 등</li> </ul>   |
| 투자 및<br>자금 지원 | 직접투자 및<br>투자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기관의 직접투자 집행</li> <li>국내외 투자사 연계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li> </ul>  |
|               | 창업성장<br>자금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비용(여비, 행사참가비 등) 최대 1천 5백만원 지원</li> </ul>   |

2

모집개요

(모집정원) 8개사 이내

\*평가 과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모집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 예정, 정원이 조기 마감될 시 추가모집은 진행하지 않음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 5. 21.(수) 16시까지

(접수기간) 2025. 5. 7.(수)~2025. 5. 21.(수) 16시까지, 약 2주간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클릭 후 참여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서식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모든 요구서류 구비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 2)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
- 3)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 4) 회원가입 후 승인까지 1-2일 소요,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물릴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 후 제출할 것을 권고

(지원자격) ①기본요건 충족한 기업이면서 ②관내 소재로 인정되는 기업

| 구분                          | 자격 세부내용   |   |
|-----------------------------|---|---|
| ①기본<br>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기술(업력 7년 이내)또는 10대 신산업(업력 10년 이내) 분야<br>개인 또는 법인 창업기업(스타트업)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10대 신산업 분야</div> <p>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br/>⑥ 빅데이터-인공지능(AI) ⑦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⑧ 우주항공-해양 ⑨ 차세대원전 ⑩ 양자기술<br/>※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방향을 반영하여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을 10년까지 설정하였으며,<br/>참가기업의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평가단계에서 판단 예정으로 신청 시 분야 해당 여부에<br/>대하여 문의받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업력 기준 참조</div> <p>-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br/>-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br/>※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br/>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p> |   |
| ②관내<br>소재<br>기업<br>인정<br>범위 |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   |
|                             |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                                  |
|                             |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                                  |
|                             |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 단, 본사 기준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만 가능<br>- 확약서 제출 必,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

□ **(지원 제외대상)**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제외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부적격 대상**

- 1)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초과인 경우
- 2) 접수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3) 접수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본사/공장/연구소 이전 협약자는 제외, 지점은 인정불가)인 경우
- 4) 신청서, 발표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7)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8)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9)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참조1] 창업기업 인정기준
- 10)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근거: [참조2] 창업기업 제재 및 환수사유

**중복수혜 대상**

- 1) 접수일 기준 동일 과제로 유사 목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2)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제출 서류) 적색 '●' 표시, (선택제출 서류) 검은색 '●' 표시**

| 업로드 단계<br>〈3단계 신청정보 입력〉 | 제출항목*   | 비고   |
|-------------------------|---|--|
| 「제출서류 업로드」              | ● (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 한글 또는 PDF 형식,<br>하나의 파일로 제출                        |
|                         | ● (서식 제2호) 자가점검표  |  |
|                         | ● (서식 제3호) 서약서  |  |
|                         | ● (서식 제4호) 사업장 이전 협약서                                     |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경우                                     |
|                         | ● (서식 제5호) 엑셀러레이터 추천서                                     | 중기부 등록 AC(창업기획자) 추천을 받은 경우                         |
|                         |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br>※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대체 가능          | 사실증명서의 경우<br>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b>법인기업인 경우 필수</b>                                 |
|                         | ● 공장등록증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
| ● 인증, 수상, 투자 등 실적 증빙자료  | Tips/유니콘/벤처기업 선정 등 우수실적 증빙자료 추가제출 가능, zip파일로 압축           |  |
|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br>● 국세 완납 증명서 1부<br>●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좌측 3가지 항목의 경우<br>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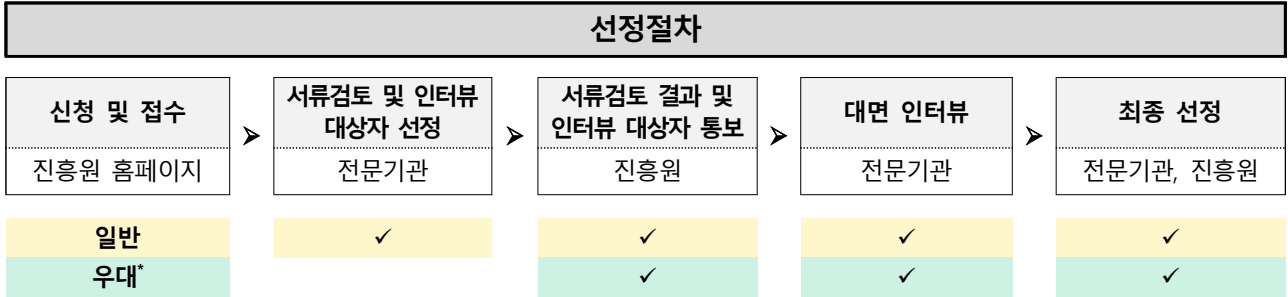
\*발급서류는 모두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파인드 시스템: 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

3

선정 및 평가

- **(선정방식)** 서류 검토(적격 및 성장성 등 평가) 및 대면 평가(약식 PT-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
  - 각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에서만 적용(서면·대면평가 점수합산 없음)



\* 우대기업: ① AC(중기부등록 창업기획자)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② 2024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은 서류 단계 자동 통과 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됨. 단, 본 사업 전문기관은 ①의 추천권 없음.

- **(평가기준표)** 가산점은 서면평가만 부여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창업팀 역량      | 가. 창업팀의 사업의지 및 기술지식수준<br>나.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 10         |
| 기술성         | 다.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br>라. 기술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성<br>마.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연관성   | 20         |
| 시장성         | 바.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성장성<br>사.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br>아. 경쟁상황 및 시장 진입가능성   | 20         |
| 성장가능성       | 자. 매출성장/고용발생/투자유치 가능성<br>차. 사업기간 내 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 20         |
| 글로벌진출       | 카. 해외 진출 목적의 타당성<br>타. 글로벌 진출 역량  | 30         |
| <b>합 계</b>  |   | <b>100</b> |
| 서면평가<br>가산점 | 파. 중기부 TIPS 선정(최근 3년 이내), 아기유니콘 선정(최근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 기업(유효기간 내)<br>-> 가산점은 3가지 이외 인정되지 않음. 접수 시점에 증빙이 유효해야 함 | 5          |

- **(서면평가)** 제출서류 적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기준표 참조
  - (과락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평가위원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
  - (합격배수) 과락기준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2배수(16개사)** 이내
    - \*2배수 내 서면평가 우대기업 포함
  - (평가일정) 접수마감 이후 2주 내외 소요
  - (결과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 공고
    - \*선정자 대상 대면평가 발표자료 제출요청 예정
  
- **(대면평가)**
  - (평가방식) 약식PT 및 개별 인터뷰(면접) 방식
    - \*심층 인터뷰 위주로 진행되며 대표자 인터뷰가 원칙(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업 재직 대리인 참여 가능)
    - \*\*PT자료 사용 가능
  - (평가기준) 평가기준표 참조(가산점 부여 해당없음)
  - (평가일정) 인터뷰 일정 및 장소는 서면평가 결과공고 시 별도안내
  - (평가시간) 기업당 총 15분 내외 부여
  - (선정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평가위원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 기업 **고득점 순**
    - \*적격자 없을 시 모집정원 미달이어도 선정하지 않으며, 미달분은 추가공고 실시
  
- **(결과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 공고
  - (공고일정) 최종 선정결과는 대면평가일 이후 2주 내 공고
    - \*상기 평가방식은 사업운영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향후일정)**
  - (추가모집 공고) 모집정원 미달인 경우 대면평가 결과공고와 함께 추가모집 공고 일정 안내 예정, 본 공고 탈락자는 재지원 불가  
정원 외 우수기업 발굴 필요시 전문기관 자체 모집 통해 추가지원 가능
    - \*단, 정원 외 기업은 본 사업에 정식참가하여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하되 **민간지원금 지급은 불가함**
  - (오리엔테이션) 기업 선정 완료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소개 및 기업별 사업비 협약식 등 진행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아래 기업 협조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향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업 협조사항

- 1)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하지 않을 것
- 2) 본 사업 관련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 3)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관리시스템(질링스) 가입 및 정보제공 동의 등  
- 사업 선정 시 시스템 가입링크 안내 예정

□ (문 의 처)

| 구분                       | 기 관 명              | 연락처                                      |
|--------------------------|--------------------|--|
| 기업모집 신청·접수,<br>사업화 자금 관련 | (재)화성산업진흥원         | ☎ 031-377-1621<br>✉ silver@hsbiz.or.kr   |
| 기업선정,<br>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련  | 주식회사<br>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 ☎ 010-7997-0162<br>✉ ye@nautilusinve.com |
|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 (재)화성산업진흥원         | ☎ 031-278-4762<br>✉ namhee@hsbiz.or.kr   |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참조1 창업기업 인정 기준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결과 ①업력기준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②폐업 또는 기타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창업기업 인정 기준표>                      |   |                    |                                |                      |                   |
|------------------------------------|---|--------------------|--------------------------------|----------------------|-------------------|
| 신청구분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업력 인정기준              |                   |
| <b>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b> |   |                    |                                |                      |                   |
| 개인<br>기업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아 다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업아님                           | -                    |                   |
|                                    |   |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 업                            |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업아님                           | 가장 빠른 개인사업자 창업일      |                   |
|                                    |   |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부도/파산 - 2년 초과<br>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 업<br>창업아님        | -<br>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                   |
|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 또는 폐업한 뒤              |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 업                | 개인사업자 개시일                      |                      |                   |
| 법인<br>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 업                            |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                   |
|                                    |   |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
|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br>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 업<br>창업아님          |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br>- |
|                                    | 동종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양수이전 동일대표의 개인사업자 개시일 |                   |
|                                    |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창 업                            |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                   |
|                                    |   |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                    | 창 업                            |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을 유지한 경우                                      | 창업아님               | -                              |                      |                   |
|                                    | 이종으로 변경한 경우                                     | 창 업                | 변경일                            |                      |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참조2 창업기업 제재조항

| 제재 및 환수(지급불가)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비고   |
|--|-----------|---------------------------|------|
|  | 참여제한      | 사업비 환수                    |      |
|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br>*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 3년        |                           |      |
| <input type="checkbox"/>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br>*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 일시중단 |
|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           | 잔액 환수(미지급)                |      |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1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 <input type="checkbox"/>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별도제재 |
| <input type="checkbox"/>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1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 1년        | 전액 환수(미지급)                | -    |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                           |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           | 잔액 환수(미지급)                | -    |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                           |      |
|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경고   |
|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                           | 주의   |
| <input type="checkbox"/>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                           |      |
|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 해당금액 반납(불인정)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 개선요청 |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 해당금액 환수(미지급)              | 개선요청 |

-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 사업비 사후정산 사업의 경우, 지급 이전 제재사항 발생시 전액환수 사항은 전액 미지급으로 처리하며, 잔액 환수 사항은 제재사항 발생시점 이전 사용금액만 인정됨.
- \* 단,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진흥원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